

추가약정서

(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)

유니온저축은행 앞

20 년 월 일

채 무 자 :

(인)

주 소 :

채무자는 유니온저축은행(이하 "저축은행"이라 합니다.)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(가계용)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 1조 (목적) 이 약정서는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, 이하 "주택"이라 합니다.)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^{주1)}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(또는 그 배우자)가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면서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매수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거래를 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.

주1) "세대"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,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(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 및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)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,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.

제 2조 (처분대상 주택)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종류	소유자	주소

제 3조 (처분대상 주택 처분의무)

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기존 주택을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 2조에 명시된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(명의이전 완료)하여야 합니다.

1. 추가매수대상이 주택일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

2. 추가매수대상이 분양권 또는 입주권 등일 경우 추가매수대상 주택의 소유권 등기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

②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제 2조에 명시된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(명의이전 완료)한 경우에는 즉시 저축은행에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.

제 4조 (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)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

1. 제 2조에 명시된 처분대상 주택을 제 3조에 명시된 각 호의 기한까지 처분(명의이전 완료)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

2.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 2조에 명시된 처분대상 주택 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

제 5조 (여신거래 약정위반)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, 향후 3년간 금융기관^{주2)}의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^{주3)}됩니다.

주2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 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

주3) 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 <별표5>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

1. 제 2조에 명시된 처분대상 주택을 제 3조에 명시된 각 호의 기한전에 처분(명의이전 완료)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
2. 제2조에 명시된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(명의이전 완료)하지 않은채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